#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5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윤건영ㆍ허성무ㆍ이용선

박수현 · 김한규 · 박선원

채현일 • 전용기 • 황명선

한병도 • 박희승 • 이광희

최민희 · 김 현 · 김영배

조계원 • 고민정 • 정태호

주철현 · 이기헌 · 강준현

정진욱 · 정준호 의원

(2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함(제2조제7호 신설).
- 나.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

조제5항제2호 신설).

- 다.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 라. 집회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 마.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별표 신설).

법률 제 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平穩)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별표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표현
- 4.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시간대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주간	야간	심야
			(07:00~해지기	(해진 후~	(00:00~
			전)	24:00)	07:00)
	등가소음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Leq)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	하
대상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소음도	최고소음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Lmax)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0	기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
	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
	대적인 표현 행위를 말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 략)	제한 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	
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	
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1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	
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	

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 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u>2.·3.</u> (생 략)

⑥ (생략)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신 설>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
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진
동, 혐오표현을 통해 사생활
의 평온(平穩)을 현저히 해칠
<u>우려가 있는 경우</u>
<u>3.•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u>별표의 기준</u>
② (현행과 같음)
③ <u>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u>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소음측정

-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 ③ (생 략)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 (생략)

⑤ (생 략)

- (생 략)
  - ②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 ② ------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까지</u>-----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
령령.	으로 정호	나다.	

~ ③ (현행과 같음)

(4)	 	 	

- 1. 2. (현행과 같음)
- 3.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 적 의견 등을 이유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반복적인 혐오표현
- 4.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 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 및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화상 • 영상을 반복적으 로 재생하는 행위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 ---제1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

아니 된다.	
, , _ ,	